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32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문진석・이연희・정성호

이정문 • 전용기 • 조계원

이춘석 · 손명수 · 이건태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도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 31일로, 남은 기간 내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법률제19425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제2조(유효기간)		
<u>2년</u> 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4년 6개월		
가진다.			